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장비 분류중 대분류 8종만 시행령에 정의하고 중분류 등은 소방 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의적절하게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, 분류권한의 위임에 따라 인증대상,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,

표준규격 개정 주기 3년을 규격개발 이후 충분한 현장활용 후 개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동장비 : 소방자동차 등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
2. 화재진압장비 : 소방용수 기구 등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
3. 구조장비 : 일반구조장비 등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
4. 구급장비 : 환자평가 장비 등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
5. 정보통신장비 : 네트워크 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·분석에 필요한 장비
6. 측정장비 : 소방시설 점검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
7. 보호장비 : 호흡장비 등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
8. 보조장비 : 기록보존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, 표준규격, 분류번호 및 보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분류항목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날부터 3년”을 “날부터 5년”으로, “필요한 경우”를 “개정수요 발생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긴급한 개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”를 “제6조에 의한 소방장비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”를 “제6조에 의한 기동장비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개인보호장비)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“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”란 제6조에 의한 보호장비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말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”를 “제6조에 의한 기동장비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”를 “제6조의

기동장비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소방장비의 분류) <u>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.</u>	제6조(소방장비의 분류) ① <u>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기동장비 : 소방자동차 등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</u> 2. <u>화재진압장비 : 소방용수 기구 등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</u> 3. <u>구조장비 : 일반구조장비 등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</u> 4. <u>구급장비 : 환자평가 장비 등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</u> 5. <u>정보통신장비 : 네트워크 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 · 분석에 필요한 장비</u> 6. <u>측정장비 : 소방시설 점검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</u> 7. <u>보호장비 : 호흡장비 등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</u>

<신 설>

제7조(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⑤ (생략)

제9조(인증대상 소방장비)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”란 다음 각

보호하는 장비

8. 보조장비 : 기록보존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, 표준규격, 분류번호 및 보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분류항목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날부터 5년-----
----- 개정
수요 발생시 -----
----- . 다만, 긴급한 개
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
이내에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
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
수 있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인증대상 소방장비) -----

----- 제6조에 의한 소방

<u>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.</u> 1. <u>소방펌프차</u> 2. <u>소방사다리차</u> 3. <u>방화복</u> 4. <u>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</u> 제27조(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 장비)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“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”란 <u>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.</u> 1. <u>소방펌프차</u> 2. <u>소방물탱크차</u> 3. <u>소방화학차</u> 4. <u>소방사다리차</u> 5. <u>구조차(크레인,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)</u> 6. <u>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</u> ② (생략) 제29조(개인보호장비) 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“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	<u>장비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---.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제27조(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 장비) ① ----- ----- <u>제6조에 의한 기동장비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--.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 제29조(개인보호장비) 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“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
---	---

비”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.

1. 공기호흡기[면체(面體: 얼굴 형상의 마스크), 용기, 등지게,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

2. 방화복

3. 안전모

4. 보호장갑

5. 안전화(安全靴)

6. 방화두건

제31조(소방장비의 성능확인)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1. 소방펌프차

2. 소방물탱크차

3. 소방화학차

4. 소방사다리차

5. 구조차(크레인,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)

비”란 제6조에 의한 보호장비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말한다.

제31조(소방장비의 성능확인) ①

-----, ----
제6조에 의한 기동장비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--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6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<u>소방장비</u> ②·③ (생략) 제36조(소방장비의 점검 등) ①· ② (생략)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소 방장비</u>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 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 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. 1. <u>소방펌프차</u> 2. <u>소방화학차</u> 3. <u>소방사다리차</u> ④ (생략)	<u><삭 제>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6조(소방장비의 점검 등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제6조의 기동장비</u> <u>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</u> <u>차</u>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장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-7681